

< 정 오 표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트리플알파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17.12.26
3. 주요 정정사항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갱신
 - 설정후 3년 경과로 연환산 표준편차 반영
 - 법 개정사항 반영

[등록신청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결산갱신	-	최근일자로 업데이트
5.투자실적 추이	결산갱신	-	기준일자로 업데이트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3년 경과로 연환산 표준편차 반영	이 투자신탁이 설정 후 3년이 미경과(최근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채권에 주로 투자하되 국내주식에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므로, 유리자산운용(주)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보통 수준인 4등급 (보통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위험등급 : 4등급(보통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는 1.27% 수준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은 5등급(낮은 위험)에 해당하지만, 국내주식에도 40% 이하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손실 발생 가능성을 지니므로 유리자산운용(주)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보통 수준인 4등급 (보통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위험등급 : 4등급(보통 위험) ➔ 등급 변동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갱신에 따른 연혁 추가		2017.12.26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갱신 - 설정 후 3년 경과로 연환산 표준편차 반영 - 법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력	결산갱신		기준일자로 업데이트(운용현황 등)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3년 경과로 연환산 표준편차 반영	이 투자신탁이 설정 후 3년이 미경과(최근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채권에 주로 투자하되 국내주식에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므로, 유리자산운용(주)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보통 수준인 4등급 (보통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는 1.27% 수준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은 5등급(낮은 위험)에 해당하지만, 국내주식에도 40% 이하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손실 발생 가능성을 지니므로 유리자산운용(주)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위험등급 : 4등급(보통 위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보통 수준인 4등급 (보통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위험등급 : 4등급(보통 위험) → 등급 변동 없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결산 갱신	-	기준일자로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결산 갱신		기준일자로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일자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최근일자로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라. 손해배상책임 ③ 증권신고서 - - 않습니다.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u>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u>)	라. 손해배상책임 ③ 증권신고서 - - 않습니다.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u>법 시행령 제 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u>)